



가축전염병박멸대책위원회 발족

농림수산부는 최근 전염병에 의한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지난달 산·학·연관계자들로 구성된 가축전염병박멸대책위원회를 발족하여 효과적인 축종별 전염병 박멸 대책을 수립, 추진코자 운영하고 있다.

동위원회는 농진청 수의과학연구소장이 주관, 축종별(소, 돼지, 닭)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12~18명의 분과위원을 두고 지난달 1일부터 이달 31일까지 운영, 주요 전염병 박멸을 위한 단계별 방역계획 수립, 가축 방역 관련 기관별 조직보강 및 검사기관의 검사장비 지원 방안, 긴급 방역실시를 위한 제도 개선 사항, 예방주사 실시 및 검진사업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기타 박멸사업 추진을 위한 필요 사항 등을 광범위하게 논의하여 농림수산부에 건의, 정부의 박멸 대책방안 확정의 추진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다.

닭 전염병 박멸대책 분과위원회 명단은 다음과 같다.

- 분과위원장 :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김선중 교수
- 간사 : 수의과학연구소 계역과장
- 위원
 - 농림수산부 가축위생과장
 - 대한양계협회전무 : 이규성
 - 대한가금처리협회장 : 김홍국
 - 한국양계연구소소장 : 김영환
 - 한국실험동물연구소 : 김상희 박사
 - (주)남덕싸니테크대표 : 오경록
 - 체리부로식품대표 : 김인식
 - 중원농장(종계)대표 : 배선채
 - 삼우축산(산란계) 대표 : 최우영
 - 영남농장(육계) 대표 : 최길영

'96년 육류중 유해성 잔류물질검사 요령 고시

농림수산부는 지난달 '96육류중 유해성 잔류물질검사 요령을 축산물위생처리법 제10조(수축의 검사), 제12조(축산물의 검사)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검사기준 등), 제28조(검사의 실시)에 의거 제정 고시(농림수산부고시 제1996-11호)하고 이를 통한 신속, 정확한 육류중 유해성 잔류물질의 경향을 분석, 효율적 대책을 강구하여 안전성 확보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 (본문 187쪽 참고)

- 다 음 -

농림수산부 고시 제1996-11호

축산물위생처리법 제10조,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96 육류중 유해성 잔류물질검사 요령을 아래와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1996. 2
농림수산부장관

'96 육류중 유해성 잔류물질검사 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축산물위생처리법 제10조,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육류중 유해성 잔류물질검사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한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사기간) 검사기간은 이 고시의 시행이로부터 '96. 12. 31. 한다.

제3조(적용범위) 잔류물질 검사업무에 관하여는 축산물위생처리법령 또는 지시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요령에 의한다.

제4조(검사내용) 검사내용은 "붙임" 「'96 육류중 유해성 잔류물질검사 요령」에 따른다.

제5조(업무지원)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시험검사 기관에서 잔류물질검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기술인원의 확보 및 정보제한, 기술교육의 실시, 예산의 확보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업무감독 등) 시·도지사는 시험검사기관의 잔류검사 장비 활용의 극대화 및 검사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별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주기적인 검사업무 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부 칙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따로 붙임"은 농림수산부장관(가축위생과), 서울특별시, 광역시장(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도지사에게 문의바랍니다.

사료품질관리 관계규정 개정

농림수산부는 사료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에 이어 사료품질관리 관계규정(사료의 공정규격, 사료검사업무지침, 사료표준분석방법)을 개정 고시하여 사료품질 관리업무의 지표를 마련했다.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의 공정규격(농림수산부고시 제1993-44호, '93. 10. 4)중 일부를 수정 보완하여 개정 고시(농림수산부고시 제1996-8호)했으며,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의거 사료검사업무지침(농림수산부훈령 제771호, '93. 8. 5)을 개정(농림수산부훈령 제851호) 했다. 또한 사료관리법 제15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료표준분석방법을 개정고시(농림수산부고시 제1996-9호)했다.

한국축산시설환경학회

'96학술논문발표회 및 정기총회 개최



환경보존형 축산을 지향하면서 '95년 창립된 한국축산시설환경학회(회장 정태영)는 지난 23일 축협중앙회 회의실에서 학회 관련인사 및 회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96학술논문발

표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특별강연, 정기총회, 학술논문 발표회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특별강연에서는 최근들어 많은 관심을 불러모으는 가축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에 관한 내용으로 축산기술연구소 시설환경과 한정대 과장의 “가축분뇨의 퇴비화 기술개발”, 순천대학교 홍지형 교수의 “액상가축분뇨의 호기성처리”, 농업과학기술원 환경관리과 정광용 연구관의 “가축분뇨의 이용과 문제점”이란 주제로 특강을 했다.

또한 학술발표회에서는 8명의 연자가 나와 열띤 발표가 있었으며, 특히 전국대학교 콕업 교수의 “육계분의 적정퇴비화 공정개발”이란 주제로 육계분의 자원화 및 사료화 가능성을 모색하여 호평을 얻었다.

(사) 한국축산시설환경기계협회

정기총회 개최



(사) 한국축산시설환경기계협회(회장 박근식)는 지난 9일 수의과학연구소 강당에서 관련인사 및 회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96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동회 발전에 공이 큰 인사에 대한 감사패 증정, 신규회원에 대한 회원증

수여, 감사보고, '95년도 주요사업보고, 부의 안전 심의 등의 순으로 진행이 되었다.

동회는 '96년도 주요사업으로 협회에 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업계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협회의 조직을 강화하고, 한국축산환경에 알맞는 기자재 개발을 위해 표준화 규격화 사업추진, 업계 경영안전화 기반 조성을 위한 공동구판사업 추진, 생산시설 지원사업 증대를 중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축협중앙회

사랑의 우유보내기 운동 전개

축협중앙회(회장 송찬원)는 최근 우유소비가 격감되고 분유재고가 급증하는 등 관련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우유 소비기반 확보, 우유의 이미지 개선, 불우이웃에 대한 사랑의 실천을 목표로 “사랑의 우유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동행사는 '96년 2월부터 4월까지(1단계) 시행을 하며, 축협, 축산관련기관·단체,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모금된 성금은 양로원, 고아원, 보육원, 무의탁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불우이웃에게 우유로 공급이 된다. 성금 입금방법은 1구좌 금액 6,000원(1명×30일×200원/200ml) 이상을 축협(구좌번호: 013-11-16019-116, 예금주: 축협중앙회 송찬원), 농협(구좌번호: 089-01-155151, 예금주: 축협중앙회), 수협(구좌번호: 026-01-09618, 예금주: 축협중앙회)으로 입금하면 된다.

(재) 농림수산정보센터

'96 농어민 정보통신 교육일정 확정 발표

■ 교육일정표

교육과정	3월	4월	5월	6월	7월	
기초과정 (2박3일)	25-27(농어민) 28-30(")	1-3(농어민2반) 8-10(농어민) 15-17(") 18-20(") 22-24(") 25-27(")	13-15(민타넷) 16-18(농교생) 20-22(") 27-29(") 30-6.1(")	3-5(농교생) 10-12, 13-15 17-19, 20-22 24-26, 27-29 (농어민)	1-3(PC동호회) 4-6(영희) 8-10(EF) 11-13 (산하기관)	
S/W 전문과정 (4박5일)	3월 4-8(낙농) 11-15(양돈) 18-22(낙농)	8월 19-23(채소) 26-31(화훼)	10월 9-28-10.1 (화훼)	11월 4-8(낙농) 11-15(양돈) 18-22(화훼) 25-29(채소)	12월 2-6(양돈) 9-13(채소) 16-20(양제)	
장보화 교육 (3박4일)	3월 4-7(후계자) 11-14(") 18-21(") 25-28(")	4월 15-18(후계자) 22-25(")	5월 29-2(후계자2반) 6-9(후계자2반) 13-16(후계자) 20-23(") 27-30(")	9월 2-5(후계자) 9-12(") 16-19(")	10월 7-10(여성반, 농교사반) 14-17(후계자반, 최고경영자반, 21-24(후계자) 28-31(")	12월 2-5(후계자) 9-12(") 16-19(")
경영교육 과정 (4박5일)	6월 10-14(과수영법) 17-21(양돈영법) 24-28(수도영법)	7월 1-5(채소영법) 8-12(화훼영법)	8월 19-23(농법) 26-31(농법)	9월 2-6(농법) 9-13(한우영법) 16-20(특작영법)		
경영 장보화과정 (5박6일)	11월 4-9(농법) 11-16(") 18-23(농법)					

* 영법 → 영농조합법인
농법 → 농업회사법인

(재)농림수산정보센터는 WTO출범에 따른 세계화·국제화 시대의 우리농업을 이끌어갈 전문 농업인 육성과 규모화된 상업농으로의 발전을 위한 농어민 정보통신 이용교육을 컴퓨터 기초과정, S/W 활용과정, 정보화과정, 경영과정 등 다양한 교육과정으로 '96 교육일정을 확정 발표했다. (본문 188쪽 참고)

'96냉동닭고기 수입권 공매대금 평균 60원에 낙찰

최소시장접근방식에 따른 '96냉동닭고기의 금년 배정물량인 10,350톤(수입권 공매 1,100톤, 관광호텔용 250톤)중 수입권 공매 물량인 1,100톤에 대하여 축산물유통사업단에 34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지난 6일 1차공매(9,723

톤 낙찰, 457톤 유찰)에 이어 7일 재입찰(236톤 낙찰, 141톤 유찰)을 거쳐 총 9,959톤이 낙찰되고 141톤이 유찰되었다.

올해 응찰단위는 최소 18톤 이상, 최대 2천톤 이하, 수입이행조건은 금년 8월 30일까지 전량 도착되도록 되어 있다.

공매납입금의 경우 업체별 평균 최소 2원에 서부터 최고 122원까지 다양한 분포를 보였으며, 평균 공매납입금은 60원선에 낙찰되었다.

이로 인해 지난해 대다수 업체가 공매납입금을 과도하게 제시, 원가상승으로 인한 경쟁력 저하로 손해를 보았으나, 금년의 경우 공매납입금이 대폭 저하되어 국내 육계시장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이 된다.

'96냉동닭고기(MMA물량 10,100톤) 수입권 공매현황

순서	업체명	물량(톤)	순서	업체명	물량(톤)
1	롯데햄우유	320	18	영육농산	400
2	한성기업	400	19	제일제당	200
3	해태상사	1,500	20	삼원농역	100
4	쌍용	736	21	우일수산	300
5	성도물산	500	22	FNS	500
6	협창맹피랜드	54	23	매일상회	200
7	아나실업	321	24	대연식품	154
8	축협중앙회	500	25	미원통상	126
9	국제무역	660	26	보부농수산	200
10	대구맥시칸	66	27	미주트레이딩	100
11	폴그린식품	60	28	현진	200
12	복주상회	400	29	대동물산	200
13	동원산업	18	30	하림	300
14	양천물산	150	31	박군통닭	200
15	대계산업	200	32	설성식품	22
16	의성상회	422	34	영육판매	150
17	가미통상	100	34	방물농장	200

비고 • 9,959톤 낙찰, 141톤 유찰
• 업체별 평균공매 납입금 — 최고 : 122원, 최저 : 2원, 평균 : 60원